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다. 지방세법

라. 지방세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안

○ 동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우리 구의 기본구세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임.

< 제정된 주요내용 >

(1) 총 4장, 3절, 51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 중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절 처분,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장 보칙 그 밖에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

(2) 안 제1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현행 「마포구세 조례」에 있는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이관하여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의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구세 세목으로 명시, 부과. 징수사무와 납세증명서의 발급 위임사항,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규정

(3) 안 제6조의 2에서는 전국자동차등록제가 2010. 12. 1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서울특별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그 관련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 1. 1부터 등록에 관한 면허세가 수탁기관의 자치구세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

(4) 안 제11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현행 마포구세 조례에 있는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규정을 이관하여 「마포구 구세기본조례」의 “제2장 부과징수”로 규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순위, 미납구세에 관한 임차인의 열람, 허가 등의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납기 전 징수와 압류, 구세환급금의 총당과 통지, 징수유예의 신청,처리,취소, 납세담보의 요구 및 담보물의 보관 등을 규정

(5) 안 제26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압류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조건부 채권의 압류, 구세확정 전 보전압류, 수색, 질문, 검사권,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등을 규정

- (6) 안 제35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공매, 공매처분 유보, 압류재산의 배분방법,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등을 규정
- (7) 안 제47조부터 안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목적 및 구성근거, 소집 및 운영,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규정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기본법」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구 구세기본조례 등에 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등록면허세와 취득 무관분 등록세를 자치구세로 세목 귀속체계를 재편하고 현행 「마포구세 조례」에 규정된 총칙 및 부과징수규정과 현행 「마포구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마포구 구세기본조례로 이관하였고 특히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규정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구세 등에 대하여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구 구세기본조례 등에 관한 표준안」의 기준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도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세법

나. 지방세법 시행령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우리 구의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 (1) 자치구 상호간 조례명칭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로 조례명 개정
- (2) 총 3장, 2절, 19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면허세 중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장 재산세, 그 밖에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3)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부과, 징수의 위임사항을 등을 규정
- (4)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등을 규정
- (5) 안 제7조부터 안제9조까지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납기, 비과세신청 등을 규정

(6)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세율)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안 제11조 중과대상지역, 안 제12조 납기, 안 제13조~안 제15조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선박,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13조~안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안 제19조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을 규정

(7)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로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검토의견]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구세조례 등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구세 전환과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시세 전환 등 시·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에 있어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에도 위배됨
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근거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6. 10 법률 제10369호)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0. 6. 10 법률 제1036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부 개정되고 2011. 1. 1자로 시행되어 구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적용으로 201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기간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임.

< 개정된 주요내용 >

- (1) 자치구 상호간 조례명칭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로 조례명 개정
- (2) 보칙 7개 조항을 포함한 총 21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3) 현행 마포구세 감면조례 22개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개 조항을 같은 법으로 이관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은 삭제

(4)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등 총 13개 세목에 대한 개별적인 감면규정 명기

(5)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보칙으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6) 안 부칙에서는 시행은 2011년 1월 1일로 하되 2011년부터는 조례 제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200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가 불가하여 감면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7)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토록 규정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국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8개 세목을 이관하고 1개 세목은 삭제하고 13개 세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감면내용도 확대할 수 없고 감면기간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구세감면조례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